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8호서식] <신설 2024. 8. 27.>

사기이용계좌 · 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

| 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|
| 접수번호 | 수번호 | | 접수일시 | | | 처리기간 | | | | |
| 피해금 (전기통신금융사: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)이 이전된 계좌 | 명의인 | | 입금일시 | 계좌번호 | | 급액 | | | | |
| 피해금 (전기통신금융사: _{피해금액으로} | 금융회사 | | | 입금계죄 | ·번호 | | | | | |
| ^{추정되는 금액) C} 입금된 전자 금융업자 계조 | | | 입금일시 | | | 극액 | | | | |
| 피해금 피해금 (전기통신금융사: 피해금액으로 | 금융회사 | | | 출금계죄 | ·번호 | | | | | |
| 추정되는 금액) C 출금된 전자 금융업자 계조 | | | 출금일시 | | Ē | 금액 | | | | |
| 특이사항(구체적 | 으로 석급니다) | | | | | | | | | |
| 그 밖의 사항 | 담당자 성명 | | 직위 | | 연 | 락처 | | | | |
|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를 확인하여 통지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
| 전자금융업자 대표 | | | | | | | 년 (. | 월 서명 | 일 또는 인) | |
| ○ ○ 금융회사 귀하 | | | | | | | | | | |
| 첨부서류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·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 사본 1부 | | | | | | | | | | |